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56 발의연월일: 2025. 4. 18.

발 의 자: 강득구·이학영·송재봉

전재수 · 채현일 · 민병덕

김영호 · 김태선 · 권칠승

신정훈 · 김남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, 의정활동 보좌 인력 부족, 지방의회의 조직권·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 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·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.

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지방연구원 외에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 하에서는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.

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, 지방의회의 전문성을

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 등).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한다)에"를 "한다)와 시·도 의회에 각각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"을 "시·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장, 대도시 시장"으로 한다.

제17조 중 "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"을 "시·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장, 대도시 시장"으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"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"을 각각 "시·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장, 대도시 시장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"을 "시·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장, 대도시 시장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"을 "시·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장, 대도시 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방자치단체"를 "지방자치단체, 지방의회"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"을 "시·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장, 대도시 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 ① 특별	제4조(설립 및 등기 등) ①
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	
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	
라 <u>한다)에</u> 지방연구원을 둘	<u>한다)와 시·도 의회에 각각</u>
수 있다.	,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임원의 선임) ①・② (생	제8조(임원의 선임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이사(이사장은 제외한다)는	③
정관에 명시된 사람(이하 "당	
연직이사"라 한다)과 원장이	
학계·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	
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<u>시·</u>	<u></u> \] •
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	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장, 대
명하는 사람이 된다.	<u>도시 시장</u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사업계획 등 승인) 지방	제17조(사업계획 등 승인)
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	
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	
에 <u>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</u>	<u>시·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</u>
<u>장</u> 에게 제출하고, 그 승인을	<u>장, 대도시 시장</u>
받아야 한다.	
제18조(결산서 등 제출) 지방연	제18조(결산서 등 제출)

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에게 사업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·지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한다.

- 1. (생략)
- 2.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(<u>시</u> <u>•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</u>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)
- 3. (생략)
- 제19조(경영평가 등) ① 시·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 연구원의 경영을 쇄신하고 정 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 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(생 략)
- 제20조(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, 연구실

<u>시·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</u>					
<u>장, 대도시 시장</u>					
1. (현행과 같음)					
2 <u>\lambda</u>]					
·도지사, 시·도 의회 의장,					
<u> 대도시 시장</u>					
3. (현행과 같음)					
제19조(경영평가 등) ① <u>시·도</u>					
지사, 시·도 의회 의장, 대도					
시 시장					
 ⓒ (취레기 기호)					
② (현행과 같음)					
제20조(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					
성) ①					

적의 상호활용,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지방연구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연의회에 행정적·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2조(검사 및 감독) ① <u>시·도</u>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 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지방연구원에 관계 서류 ·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_						
-					<u></u> 스	<u> • 도</u>
ス]사,	시 •	도	의회	의장,	대도
入] 入	<u> 장-</u> -				
-						
_						
2	<u> 기</u>	방자	치딘	<u></u> .체, 고] 방의	হী
-						
_						
제22	2조(기	검사	및	감독)	① <u>~</u>	<u> </u> · 도
ス]사,	시 •	도	의회	의장,	대도
入) ス	<u> 장</u>				
_						
_						
_						
_						
_						
_						
_						
2) (현] 행고	나 같	·음)		